



〈2021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〉 연극분야 안내 매뉴얼

목차

1

2021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

2

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(*현 사업 기준)

3

예술인력 선발 및 운영

1. 2021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

1.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

❖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이란?

공연예술분야의 폐업 및 실업 사태를 방지하고 공연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, 2021년 하반기 공연예술 5개 분야(연극·뮤지컬·무용·음악·전통)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예술인력(창작, 기획, 경영, 행정, 국제교류 무대 기술 등)에 대해 5개월간('21년 7월~'21년 11월)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1.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

지원대상

- ❖ 2021년 하반기 일정한 공연예술 활동계획이 있는 모든 예술인
 - 공연 실연분야
(배우 및 연출가, 안무가, 작곡가 등 제작 실연인력)
 - 공연 지원분야
(공연 경영·기획·홍보·마케팅, 국제교류, 무대기술 등)

지원내용

- ❖ 일정 절차(공모, 심사)에 따라 선발된 예술인력의 공연예술활동에 대해 5개월간('21.7.~'21.11.) 인건비 지원
 - 월 1,800,000원(세전금액) × 5개월
(1인당 실수령액 월 145만원 내외, 근로자·사업자분 4대보험료 포함)
- ※ 최종 선발된 예술인력은 협회와 직접 근로계약 체결(~'21.6.30.까지)

1.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

협회

- 예술인력 채용 승인
- 예술인력 교육 및 근로계약 체결
- 선정된 단체 예술인력 지원 및 임금지급(협회 -> 인력)
- 사업 수행 점검 및 관리(모니터링)
- 정산 및 결과보고 확정

예술단체/개인

- 선정단체별 예술인력 채용공고
***채용공고 10일 이상 필수**
- 예술인력 선발심사 및 채용후보자 구성
- 공연예술활동 수행
- 예술인력 근태관리·감독
- 결과보고서 제출

예술인력

- 협회와 근로계약 체결
- 월별 소정근로시간대로 근무
- 협회 현장점검(모니터링) 협조
- 복무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(시프티) 활용 협조

1.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

❖ 전체일정

일정	21.4.19(월) ~ 5.3(월)		5.4(화) ~ 6.30(수)			
주체	협회	단체/개인	협회	단체/개인	협회	
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신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선정단체 및 개인 발표 • 선정단체 사업수행 교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력채용 공고 • 인력 선발심사 및 채용후보자 구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력 채용승인, 교육 및 근로계약체결 	

21.7.1(목) ~ 11.30(화)			~ 12.15(수)
협회	선정단체/개인	예술인력	단체/ 개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선정예술인력 지원 및 임금 지급 • 사업수행 점검 및 관리(모니터링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연예술활동 수행 • 예술인력 근태관리 감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연예술활동 수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결과보고서 제출

2.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(*현 사업 기준)

2.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(*현 사업 기준)

❖ 선택적 근로시간제란?

예술인력이 1일 당(6시간) 또는 1주 당(30시간) 근로시간을 미달하거나 초과하더라도, '월별 총 근로시간'₁₎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합한 근로시간의 운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는 본 사업에서 공연예술계의 특성상 지원 단체의 연습이나 공연 일정에 따라 1일 또는 1주당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 적용한 제도입니다.

1) 월별 총 근로시간 : 1일당 소정근로시간(6시간) x 1개월당 소정근로일수

해당 월	소정근로일수	월 총 근로시간
2021-07	23일	138시간
2021-08	20일	120시간
2021-09	21일	126시간
2021-10	21일	126시간
2021-11	20일	120시간

※ 매월 총 근로시간('21.7.~'21.11.) (*월요일을 주휴일로 설정하고, 수~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설정 시)

2.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(*현 사업 기준)

❖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기준

기본 : 주 30시간
(주 5일X 6시간)

- ① 1주간 근로일수 : **최소 3일** ~ 최대 6일
- ② 1주간 최소 하루는 주휴일로 부여
(개개인이 주휴일이 바뀌면 월별 총 근로시간도 바뀜)
- ③ 1일당 6시간을 부여하더라도, 식사시간(1시간)은 부여(필수) = 총 7시간 근무
- ④ 1일간 근로 가능 시간대 : 09:00 ~ 22:00 (1일당 10시간 초과 근로는 절대 불가)
- ⑤ **월별 총 근로시간 충족은 필수, 지각/조퇴/결근 등 근로시간 미달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근로일에 보충함으로써 월별 총 근로시간을 '반드시' 충족시켜야 함**

※ 장애 인력 근로시간

기본 : 주 15시간(주 5일 X 3시간) / 월 60시간, 16일 이상 근무

2.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(*현 사업 기준)

※ 출근 시간에 따른 1일 최대 가능 근로시간

시간대	휴게시간	근로시간	총 근로시간(휴게 + 근로)
09:00~20:00	1시간	10시간	11시간
10:00~21:00	1시간	10시간	11시간
11:00~22:00	1시간	10시간	11시간

※ 권장 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(선택사항)

시간대	휴게시간	근로시간	총 근로시간(휴게 + 근로)
10:00~17:00	1시간	6시간	7시간
13:00~20:00	1시간	6시간	7시간
15:00~22:00	1시간	6시간	7시간

2.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(*현 사업 기준)

휴일 근로

- ◎ 휴일 근로의 경우 [근무한 시간 × 1.5배] 로 계산하여 보상휴가로 제공
- ◎ 공연 등과 같은 일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, 반드시 사전에 협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발생
- ※ 사전 승인은 협회가 정한 기간(2일 전까지)에 승인요청 가능하며, 이후의 신청은 불허
- 휴일 : 주휴일, 광복절, 추석연휴, 개천절, 한글날 (대한민국 기준, 국가 지정 공휴일)

연차

- 매월 만근 시, 익월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
- 예시) 7월 만기 출근 시, 8월에 연차 1일 발생
- ※ 마지막 월인 2021년 11월에는 2일의 연차 발생
- ⇒ 7월~11월까지 만근을 가정할 경우
총 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

※ 보상휴가와 연차는 반드시 사업 종료 전('21.11.30)에 모두 소진해야 함

3. 예술인력 선발 및 운영

3. 예술인력 선발 및 운영

❖ 선발절차

절차	일정	주체	세부내용
예술인력 채용공고 (*최소 10일 이상 공고) 지원협약서 제출	5.26(수)~6.8(화)	선정 단체/개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예술인력 채용공고 [필수] 한국연극협회 홈페이지에 공고 게시 (커뮤니티-채용정보 게시판) [선택] 기타 채용 사이트 등 자체적으로 추가 공고 진행 가능 「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」 지원협약서[붙임1] 협회로 제출 전자계약 체결(예정)
예술인력 선발심사	6.9(수)~6.22(화)	선정 단체/개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예술인력 선발 심사(서류,면접,실기 등) 및 채용후보자 구성 채용후보자 필수제출서류 협회로 제출 / 이메일(kttheatre1963@daum.net)
적격심사 및 승인여부 통보, 근로계약		협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력의 채용서류 검토 후 최종 승인여부 통보 선발 인력과 근로계약 체결 / 전자계약 체결(예정)
예술인력 근무안내	6.23(수)~6.30(수)	협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선발 인력 대상 근무 안내 진행
예술인력 근무	7.1(목)~11.30(화)	선정 단체/개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근로계약 체결 이후 근무(공연예술활동) 시행 _근태관리 부분은 추후 상세 안내

※ 각 절차의 세부내용 및 관련서류는 해당 게시물 첨부파일 참고

3. 예술인력 선발 및 운영

❖ 예술인력 자격요건

공연 실연분야	공연 지원분야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실연자 : 배우, 연주자, 성악가, 무용수 등- 제작 실연인력 : 연출가, 안무가, 작곡가, 지휘자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공연 기획·홍보·마케팅, 국제교류 등- 무대예술, 무대기술(무대 디자인, 조명, 음향 등)- 경영·일반(총무, 세무, 인사 등)- 온라인 관련 작업지원 (유튜브 영상 제작 등)

- 대한민국 국적자(나이 제한 없음)
- 사업공고일(4/19) 기준 1개월 이내 선정단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공연예술분야 종사자 (예술인고용보험 제외)
- 지원기간(21.7.~21.11.) 동안 상근(주 30시간 활동) 근무 가능자

※ 장애예술인력의 경우, 근무 시간 적용 기준이 상이하므로 협회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3. 예술인력 선발 및 운영

❖ 예술인력 자격요건

예술인력 유의사항

- 예술인력이 지원단체 대표자와 이해관계자(배우자, 직계가족, 4촌 이내 친인척)일 경우 지원 불가
- 2021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및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사업 지원인력 지원 불가
- 예술인력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등 문예기금 사업 또는 다른 기관 보조사업의 인건비 지급대상자인 경우 지원 불가
- 단체 대표자는 예술인력으로 지원 불가
- 개인그룹 대표자는 지원 가능하나, 2020년도 동일 사업으로 90일 이상 지원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
- 2020년도 동일 사업에 90일 이상 참여한 예술인력 반복 참여 불가(장르 불문)
- 「장애인고용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은 반복 참여 허용
(*취업취약계층 : 저소득층, 결혼이민자, 여성가장,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 갱생보호대상자 등)

3. 예술인력 선발 및 운영

❖ 예술인력 자격요건

예술인력 유의사항

- 국내활동을 원칙으로 함. 해외출장은 사전 승인 가능하나, 해외 체류인력은 신청불가 (*해외출장도 체류기간에 따라 논의필요)
- 주 근무지로 출퇴근 가능한 예술인력이어야 함. (카페, 자택 근무 불가 / 대관한 연습실, 공용오피스공간은 근무 가능)
*자택근무가 불가피할 경우, 협회의 사전 승인 필요
- 본인소지 핸드폰으로 출퇴근시스템 사용 가능한 예술인력이어야 함.
- 단체 대표자가 예술인력에게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일체의 금품 등을 요구할 시 부정수급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, 관련 금액 환수 조치, 제재부가금(300%) 부과 및 향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

※ 추후 적발 시, 환수 조치될 수 있으므로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.

우리, 카카오톡 친구 해요!
한국연극협회 카카오톡 채널 OPEN!



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



감사합니다😊

- ❖ 이메일: ktheatre1963@daum.net
- ❖ 연락처: 02-744-7505
- ❖ 카톡: 한국연극협회